

비조합원 보건·의료 서비스 공급 실적 신고서

※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3일
------	-----	------	----

신고 조합	명칭	전화번호
	소재지	

신고 내용	전년도 총 공급고 * 공급고는 매출액을 의미	각 의료기관·매장·사무실별 매출액을 각각 기재합니다.
	비조합원 대상 공급고	

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46조제3항, 제67조제1항 단서, 제78조,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」 제5조제5항 및 제8조제2항,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비조합원 보건·의료 서비스 공급 실적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(이사장)

(서명 또는 인)

공정거래위원회

귀하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

첨부서류	1. 전년도 총 공급고 증빙자료 1부 2. 비조합원 대상 공급금액 증빙자료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

신고인

처리기관 :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